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 심포지엄





일시 | 2020. 7. 3.(금) 14:00 ~ 17:30

장소 |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주최 | 서울지방변호사회 · (사) 한국조정학회

서울지방변호사회
Seoul Bar Association

한국조정학회
Korea Society of Mediation Studies

프로그램

일 시 : 2020. 7. 3.(금) 14:00 ~ 17:30

장 소 :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진행순서

시 간	일 정	
13:30 ~ 14:00	등록	
진행 사회 : 김시목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14:00 ~ 14:12	인사말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용섭 사단법인 한국조정학회 회장
	기념사진 촬영	
좌장 : 황덕남 변호사		
14:12 ~ 14:20	1 세션 참가자 소개 및 진행 방식 안내	
14:20 ~ 15:30	제 1 주제에 대한 발표, 토론	제 1 주제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 주제발표 : 성중탁 교수 지정토론 1 : 최계영 교수 지정토론 2 : 곽정민 변호사 지정토론 3 : 김정덕 변호사
15:30 ~ 15:50	휴식	
15:50 ~ 16:00	2 세션 참가자 소개 및 진행 방식 안내	
16:00 ~ 17:10	제 2 주제에 대한 발표, 토론	제 2 주제 프랑스의 조정제도와 시사점 - 민간형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주제발표 : 박현정 교수 지정토론 1 : 왕승혜 박사 지정토론 2 : 이영임 변호사 지정토론 3 : 이제우 교수
17:10 ~ 17:20	플로어 자유토론	
17:20 ~ 17:30	폐회사(김용섭 사단법인 한국조정학회 회장)	

목 차

제 1 주 제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 ····· 1
성중탁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문 1 ····· 31
최계영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문 2 ····· 35
곽정민 변호사 (법무법인 클라스)

토론문 3 ····· 41
김정덕 변호사 (법무법인 민서)

제 2 주 제

프랑스의 조정제도와 시사점 – 민간형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 47
박현정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문 1 ····· 75
왕승혜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토론문 2 ····· 81
이영임 변호사 (변호사 이영임 법률사무소)

토론문 3 ····· 87
이제우 교수 (강남대학교)

참가자 프로필

좌 장



황덕남 변호사

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전)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전) 한국법학원 상임이사
현) 주식회사 하나은행 사외이사
현)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주제발표1



성중탁 교수

전)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변호사
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주제발표2



박현정 교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판사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현)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 위원
현)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참가자 프로필

지정토론1



최계영 교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예비판사, 판사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정토론2



곽정민 변호사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현) 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전문가후견인

지정토론3



김정덕 변호사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조기조정위원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반조정위원
현) 서울남부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
현)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후보자
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위원

참가자 프로필

지정토론4



왕승혜 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사 / 법학석사 / 법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불문학사 / 불문학석사
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지정토론5



이영임 변호사

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현)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 위원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조기조정위원
현)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지정토론6



이제우 교수

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현)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조교수
현)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현) 용인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현) 수원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박종우 변호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 심포지엄에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송을 대신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인 ADR은 분쟁해결의 새로운 모델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장점에 더하여,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해 유연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ADR의 장점이 지식정보사회로 사회 전반이 재편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히 복잡한 상사 분쟁을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기본법 제정 등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 근래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행정형 ADR 등이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나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될 경우 오히려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예상하기 힘든 다층적인 법적 쟁점을 놓칠 수 있고, 이는 자칫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향후 ADR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변호사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청년 변호사들이 ADR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대표적인 ADR이라고 할 수 있는 조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를 짚어 보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사단법인 한국조정학회는 조정제도에 대한 협력 연구 등을 통해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 체결과 심포지엄을 위해 힘써 주신 사단법인 한국조정학회 김용섭 회장님 이하 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포지엄에 주제발표자로 참여해 주신 성중탁 교수님, 박현정

교수님과 토론으로 참여해 주신 여섯 분 토론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좌장으로 심포지엄 진행을 주관하실 황덕남 변호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조정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과 법조인들이 ADR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더욱 많이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7월 3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박 종 우**

인사말



존경하는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한국조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국가 사회적 어려움이 없지 않으나, 강산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성하(盛夏)의 계절에 한국조정학회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대주제로 제35회 학술대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소송일변도의 분쟁해결로 법원에 사건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당사자 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적극적인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분쟁의 형태가 점차 복잡해지고 사법절차만으로는 분쟁당사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ADR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조정(調停)이 중요한 분쟁해결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변호사의 역할은 법에 기초한 권리실현 및 그것을 통한 분쟁처리에 국한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처리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호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정에 참여하는 변호사는 조정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조정절차를 주재하는 진행자로서의 지위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전자의 지위에서는 특정인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지만, 후자의 지위에서는 공평성과 중립성의 의무를 준수할 것이 요구됩니다.

변호사는 분쟁을 소송으로 무리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ADR에 의한 분쟁해결을 모색하는 등 종합적인 소송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의뢰인으로부터 외면받게 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조정에 임하는 변호사는 재판을 한 경우와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여 의뢰인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종합적인 법률적 조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변호사의 직역이 전통적인 송무 영역을 넘어 행정 부처나 사내변호사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법원조정센터의 상임조정위원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는 물론 행

정형 조정기관에서 조사관·심사관 등으로 근무하며 ADR을 전담하는 변호사 숫자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변호사 3만명 시대에 있어 조정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다양한 분쟁조정기구에서 조정위원, 조정인, 심사관 또는 조사관으로 활동하는 변호사가 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학술대회의 개최에 앞서 오전에 한국조정학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간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여 조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양 기관이 공동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한국조정학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짚어보고 조정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학술대회는 조정분야에 식견과 경륜을 갖춘 황덕남 한국조정학회 부회장께서 좌장을 맡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제1주제 발제자인 경북대 성중탁 교수는 조정제도 전반을 개관하고 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조정에 있어서의 변호사의 역할에 대하여 검토할 것입니다. 제2주제 발제자인 한양대 박현정 교수는 프랑스 법제도에 정통한 학자로 프랑스 조정제도와 시사점에 대하여 고찰하면서 민간조정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검토할 것입니다. 두 주제 모두 조정학계와 법조 실무계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토론자로 참여하는 서울대 최계영 교수, 곽정민 변호사, 김정덕 변호사, 한국법제연구원 왕승혜 박사, 이영임 변호사 및 강남대 이제우 교수께서 오늘의 학술대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 조정제도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적 방향을 이끌어내고, 변호사의 조정역량의 강화에 기여하는 내용의 토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오늘 학술적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아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종우 회장님과 집행부 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실무 담당자 분들과 한국조정학회 집행이사 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흔쾌히 이번 학술대회의 좌장, 발제 및 토론을 맡아 주신 출중한 역량의 전문가 분들과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3일

사단법인 한국조정학회 회장 **김 용 섭**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 심포지엄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

성중탁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

성중탁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Ⅰ. 서설

법조인들은 물론 일반인들 사이에서조차 '명판결도 화해보다 못하다'는 말이 회자된다. 재판보다 화해나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이 당사자는 물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이익이라는 뜻으로 그만큼 재판에 드는 비용과 시간낭비가 크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런 연유로 법원은 조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90년 9월 민사조정법을 제정하여 여러 법률로 나뉘어 규율되던 조정제도의 운영방식을 통일하였으며 법 시행 20년이 지난 지금 조정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 다만 법 시행 이후에도 조정에 익숙하지 않은 법률문화와 국민의 이해 부족 및 법원이 주도하는 현행 조정제도 운영방식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으로 법조인 양성제도가 바뀐 지 10년 만에 변호사 수는 2만 5천 명을 넘었다. 경쟁이 치열해진 법률시장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전통적인 소송과 자문에 한정시키지 않고, 조정전문가로 그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사적 조정 내지 민간 조정시장의 형성과 그 활성화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변호사법에 비법조인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제109조)을 두고 있어 비법조인이 금품을 받고 분쟁을 조정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므로 조정시장의 형성 및 활성화는 구조적으로 변호사들이 주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위와 같이 사적 조정의 활성화는 일반 국민의 조정제도 전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조정인에 대한 전문 교육을 전제로 고품질의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에 부응이라도 하듯 최근 법률신문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가 기업·금융·환경·소비자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실효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변호사시장의 블루오션이 되고 있다는 기사가 1면으로 실렸다. 조정·중재 등 당사자 참여와 자율성이 보장된 ADR은 열린 분쟁해결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동안 '법외절차', '비(非)법조화' 등의 인상이 짙었지만 분쟁 상황과 대상 사건이 전문화되면서 정확한 법해석과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변호사 역할이 ADR에서도 각광받는 추세가 되었고, 이런 흐름을 타고 전문 ADR기관에 입사해 조정·중재 전문가로 성장하는 변호사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1)]

위와 같은 화두를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조정 등 재판외 분쟁해결제도 전반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관련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및 조정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의 역할 등에 관해 간략히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한다.

Ⅱ. 재판 외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의의와 변호사의 역할

1. 의의와 장, 단점

(1) 의의

재판 외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란 재판을 대신하는 분쟁을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대표적인 예로 조정, 중재, 화해를 들 수 있다.[2)] 특히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의료, 방송 통신 등은 분쟁의 속성이 복잡하고 관련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같은 이유로 소송 비용도 많이 들 뿐 아니라, 특히 특허침해소송은 소송 진행 중에는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업까지 함께 지연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따라서 분쟁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ADR을 활용한 분쟁해결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특히, 소송에서는 법리가 가장 중요

1) 법률신문, "ADR 이용 급증… 변호사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2020. 6. 11.자 기사.

2) ADR은 대체로 법원에 의한 민사조정, 행정기관 등에 의한 조정, 민간기구에 의한 각종 알선·조정·중재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ADR의 논의는 대부분 법원의 민사조정에 중점이 두어져 있고, 이에 부가하여 행정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정도이며, 민간기구에 의한 조정에 대해서는, 상사중재원의 중재를 제외하고는, 제도의 시행이나 학문적인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그리고 행정법분야에서의 조정의 경우에도 주로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쟁해결 정도로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조정에 있어서는 조리에 따른 해결이 중요한데 조리는 상식과 양심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사물의 본성으로 이해되고 있어 분쟁의 실정에 바로 적용되는 해결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3)]

(2) ADR의 장점

①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경제적인 비용으로 분쟁의 해결이 가능하다. ②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은 소송법에 규정된 엄격한 절차와 경직된 분위기의 절차임에 비해, ADR은 상호 합의에 따라 엄격한 형식과 격식을 완화하여 우호적이고 호혜적인 분위기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한편 법원의 재판은 공개주의가 원칙이므로, 양 당사자 간의 공방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반면, ADR의 경우에는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며, 따라서 분쟁과 관련된 영업비밀 등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이처럼 조정을 비롯한 ADR은 재판과는 달리 비정형적이고 자율적 분쟁해결수단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저렴하며, 분쟁당사자들에 의해 스스로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분쟁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분쟁해결시스템으로 기능한다. 결국 조정 등 재판외 분쟁해결 수단은 당사자가 분쟁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절차가 간소하며, 소송을 통하여 달성할 수 없는 **적대적 감정과 분노를 치유하는 데 일조하고, 더 나아가 개인적 관계를 보다 개선하고,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거나 축소하며, 창조적이며 개별적인 해결을 위한 순기능을 제공**한다.[4)]

(3) ADR의 단점

① 당사자에게 충분한 절차보장과 사실관계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적, 사회적 강자로부터 양보를 얻어 내는 절차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②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에 의한 분쟁해결만을 강조하다가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 ③ ADR에서는 판단 기준이 소송보다 주관적일 수 있어, 자의적이거나 당사자 간의 주장을 단순히 절충하는 식의 판단이 될 위험성이 있다. ④ 또한 어느 일방 당사자가 이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불복하면 시간과 비용이 오히려 바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보다 더 들 수 있다. 또, 중재의 경우 불복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 내려지면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

3) 이로리, "조정교육과 법조인 조정전문가 양성의 필요성", 법률신문, 2018. 1. 9.자 연구논단
4) 김용섭, "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조정인의 교육과 역량", 조정마당 열린대화 9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면.

2. 종류

(1) 조정제도

조정(mediation)은 영미법계 국가에서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분쟁당사자들의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에서 소송의 대안으로 법원에 의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 왔다. 현재 조정은 영미법계 국가들뿐만 아니라 대륙법계 국가들에서도 보편적으로 도입되어 있으며, 국내적 차원을 넘어 국제적 차원에서도 이용이 장려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역내에서 국제적 성격을 갖는 민·상사 분쟁해결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조정의 이용을 장려하며, 조정과 사법절차 간의 건전한 관계를 보장함으로써 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민·상사조정지침(Directive 2008/52/EC)을 채택하였고, 이에 EU회원국들은 2011년 5월 21일까지 동 지침을 이행하는 새로운 입법을 하거나 기존의 조정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정은 제3자(조정인)의 권고안에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중재와 차이가 있고, 제3자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화해와 차이가 있다. 조정에는 법원이 관여하는 민사조정이 있는데 민사조정에 의해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민사조정법 제정 이후 법원은 조정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시작하였고, 소비자분쟁, 하도급분쟁, 콘텐츠분쟁, 저작권분쟁, 의료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각 개별법에 따라 다수의 행정형 조정제도가 도입되었다.[5]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형사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범죄 피해자가

5) **ADR은 담당기구 내지 기관에 따라 사법형, 행정형, 민간형 ADR로 분류되는데, 민사조정, 가사조정은 사법형 ADR이고,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은 행정형 ADR이며, 대한상사중재원은 민간형 ADR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ADR은 주로 사법형 ADR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 특히, 행정형 ADR의 경우 국내 행정형 ADR 기관·기구 숫자는 60여개로 대부분 소속 기관 내에서 분쟁조정팀이나 위원회 등의 명칭으로 운영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처럼 별도의 기관으로 분화돼 있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행정형 ADR로 손꼽히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접수 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 2만3145건에서 2016년에는 2만5226건, 2017년 2만5205건, 2018년 2만8118건, 2019년 2만9622건 등 매년 5~10%씩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조정 성공률은 평균 46.8% 수준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도 2008년 설립된 이래 총 2만2000건의 분쟁을 처리해 평균 82%의 높은 조정 성립률을 기록했다. 접수되는 사건 수도 연평균 20.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최근 5년간 평균 조정 성립률이 89.8%(신청취하 건은 제외)에 달한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 절차가 개시되는 제도적 한계를 갖고 있지만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 사건에 한해서는 조정이 '자동개시'되도록 2016년 법개정이 이뤄졌다. 자동개시 사건의 조정 성립률은 2017년 81%, 2018년 77.1%, 2019년 78%를 기록했다. 이는 법원의 민사사건 조정 성립률이 30%를 밑돌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행정형 ADR의 조정 성립률은 괄목할 만한 수준이다.(**법률신문, "ADR 이용 급증… 변호사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2020. 6. 11.자 기사.)**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는 목적에서 형사조정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이와 같이 조정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승패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원만히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 긴 법정싸움을 통한 감정 소모 등 소송과 같은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2) 알선 및 주선

분쟁 당사자가 아닌 중립적 제3자가 교섭과 협상을 중재, 주선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이는 누구나 할 수 있다.

(3) 협상 및 화해

당사자 간의 직접적, 자주적 교섭을 통한 상호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자의 개입 없이 양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분쟁해결을 시도한다는 점이 특징이며, 많은 분쟁사건이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화해로 해결되고 있다.

(4) 중재

미리 당사자가 중재를 맡길 제3자를 계약서 등으로 합의하여 정해 둔 경우,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그 제3자의 중재판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중재의 특징은 양 당사자는 중재자의 중재판정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고, 중재판정에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불복은 불가능하다는 데 있으며, 반드시 미리 중재방식에 의한 분쟁해결을 예정하는 중재합의가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는 사건을 법원에 제소하면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각하된다.

3. ADR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

(1) 의의

조정 등 ADR의 성공 여부는 역량 있는 조정인에 달려있기 때문에 조정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즉 조정의 성공의 열쇠는 절차주재자인 조정인이라고 할 것이

므로 훌륭한 조정인을 양성함으로써 조정은 더욱 발전하고 재판 못지않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분쟁해결장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각종 조정제도는 공통적으로 법조인에게 조정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민사 조정기관인 조정담당 판사, 수소법원, 상임조정위원은 법조인이며, 민사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위촉되는 조정위원에도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행정형 조정제도의 경우에도 조정위원의 자격은 개별법에 따라 분쟁의 성격에 따른 전문성이나 대표되는 이해관계에 따른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일정한 경력의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조정인은 법조인이 그 주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며, 법조인들의 조정능력은 조정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6]

(2) 기본적 자격요건과 역할

조정 등 ADR에 있어서 변호사의 기본적인 자질 및 역할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에 관여하는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설득과 타협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설득능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끈기, 상대방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 인간에 대한 이해, 심리학적 소양 등이 필요하여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설득과 타협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7] 또한 조정대리를 맡은 변호사는 상생의 자세를 가지고 상대방 대리인과 상대방 당사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둘째, 재판외 분쟁절차에 관여하는 변호사는 ADR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ADR이 재판과는 어떻게 다른가를 꿰뚫고 있어야 한다. 즉 당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아울러 일반 법리에도 해박하여 당사자가 어떤 엉뚱한 주장을 하더라도 이를 법리적으로 잘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조정대리인으로서 교섭전략의 수립, 당사자와의 역할 분담과 다양한 대안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법률가로서 조정대리인은 당사자가 조정인과의 대화를 함에 있어 법적인 뒷받

6) 이로리, 전게 연구논단 참조.

7) 미국의 협상전문가인 개빈 케네디(Gavin Kennedy)는 "모든 것은 협상가능하다.(Everything is negotiable)"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 하바드대학의 협상문제연구소 교수인 로저 피셔(Roger Fisher)는 1981년의 명저인 "Getting to Yes"에서 Win-Win 협상의 4원칙을 창안하였다. ① 사람과 실체를 구분할 것: 객관적 실체에 머물러 있어 인간의 문제와 외부적 실체문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상대방의 이익에 대하여 물을 것: 그의 지위 배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입장이 아닌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당사자가 주장하는 표면적인 내용에 주안점을 두지 말고 당사자의 주장의 배후에 있는 욕구, 희망, 관심, 두려움 즉 이해관계를 살피라는 것이다.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입장과 이익과의 상관관계이다.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③ 선택을 위한 해결옵션을 발전시킬 것: 이는 상호 이해관계를 발전시키는 창조적 대안을 개발하라는 의미이다. ④ 가능한 중립적 척도를 배려할 것: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안선택기준을 합의하고 그 기준으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상공식 4원칙을 구체적 갈등상황에 적용하면 양자 간의 협상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김용섭, 전게 논문, 18면에서 재인용)

침을 제공한다. 조정인이 조정안을 제시하면 조정대리인은 이에 대한 평가를 하여 당사자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의 판단을 돕는 것이다. 또한 조정안의 조정주문이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집행 가능한 조정이 되도록 조력하여야 한다.[8)]

Ⅲ. 조정제도 등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9)]

1. 유럽조정자행위규약

'유럽조정자행위규약'(European Code of Conduct for Mediators)(이하 'EU행위규약'이라 함)은 개별 조정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자발적으로 약속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유럽조정자행위규약은 조정자의 자격, 선임, 의무, 역할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조정자로서 변호사 등의 역할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변호사는 조정과정에서 당해 분쟁 사항의 적임자로서 전문적 지식을 가져야 하고, 조정인으로 임명 수락 전에 당해 사건에서의 조정을 제대로 수행할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도 점검해야 한다. 또한 조정자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들에게 전문적 능력과 경험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적당한 조정횟수, 조정장소, 조정방식 등 조정일정 전반에 관하여 당사자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둘째,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변호사는 조정사건과 관련하여 독립성 또는 이해관계의 충돌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당사자들에게 모두 공개한 후 당사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활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는 상황[10)]의 공개의무는 조정절차 진행 과정 전체에 걸쳐 지속된다.[11)] 셋째,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변호사는 항상 당사자들에게 공정하게 활동하고 그렇게 보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정의 전과정에서 모든 당사자들을 대등하게 대하도록 약속하여야 하고, 조정 당사자들이 조정과정의 절차적 특성 및 조정자와 당사자들의

8) 박노형, "조정의 선진화 및 활성화 소고", 분쟁해결 창간호, 한국조정학회, 2011. 6. 12면.
9) 이하 내용은, 사법연수원, "ADR", 2015, 60-80면; 법무부, "ADR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016. 1, 70-169면을 요약, (재)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10) 조정자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 일방과의 개인적 또는 사업상의 관계. 둘째, 조정의 결과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재정적 또는 기타 이익. 셋째, 조정자 또는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구성원이 당사자 일방을 위하여 조정자 아닌 다른 역할을 과거에 수행한 사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11) EU행위규약 전문., 1.1., 1.2., 2.1.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12] 한편 조정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사자들을 직접 심리할 수도 있다. 넷째,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변호사는 모든 당사자들이 조정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다섯째,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변호사는 당사자들이 자발적 동의(informed consent)에 기초하여 서로 합의한 조건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정자는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자신의 권한 내에서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공식화할 수 있는 방법과 합의를 집행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을 마련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여섯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변호사는 법률 또는 공공복리를 이유로 강제되지 않는 한 조정이 수행되거나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조정에서 또는 조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즉, 당사자 일방이 조정자에게 비밀로 공개한 정보는 허락없이 또는 법률로 강제되지 않는다면 타방 당사자에게 공개될 수 없다.[13]

한편, 조정자는 다음의 경우에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조정을 종료할 수 있다. 첫째, 조정사건의 진행상황과 결과 및 조정자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조정자에게 집행력이 없거나 위법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경우. 둘째, 조정자가 조정을 진행하더라도 분쟁해결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셋째,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를 거부하는 경우[14]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EU조정지침

(1) 채택경위

2008년 5월 21일 유럽의회와 EU이사회는 'Directive 2008/5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May 2008 on certain aspects of mediation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이하 EU조정지침이라 함)을 채택하였다. EU조정지침의 목적은 조정을 장려하고 조정과 사법절차의 균형적 관계를 보장함으로써 대체적 분쟁해결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조장하는 것이다. EU조정지침은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EU회원국 내에서의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보장 장치를

12) **이와 관련하여 조정자는 조정 개시 전 조정자와 당사자들 사이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당사자들로 하여금 조정합의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정합의(mediation agreement)는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조정자는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3) EU행위규약 2.1., 2.2., 3.1., 3.2., 3.3.

14) 참고로, **당사자들은 언제든 정당한 사유 없이도 조정절차를 중도 철회할 수 있다.**

마련하였고, 특히 조정인의 의무, 조정과 출소기간과의 문제,[15] 비밀성 유지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보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16]

(2) 조정인의 비밀유지의무

EU조정지침에서 '조정'은 어떤 명칭이든 둘 이상의 분쟁당사자들이 스스로, 자발적 근거로 조정자의 지원으로 그들의 분쟁의 해결에 대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체계적 과정을 의미한다. EU조정지침에서 '조정자'(mediator)는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최적의 방법으로 조정을 수행하도록 부탁받은 제3자를 의미하며, 조정자의 비밀유지(confidentiality) 문제는 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비밀유지보장이 되지 않으면 조정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정과정에서 비밀유지가 보장되어야 당사자들이 솔직하고 진지하게 서로의 분쟁 해결의 노력을 할 수 있다. 조정의 비밀유지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재판이 아닌 조정을 통하여 그들의 분쟁을 해결하게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엄격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정보는 추후 재판이나 중재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없어야 하며, 조정자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조정이 실패한 후 조정자는 추후 사법절차에서 증인이 될 수 없다. 이 같은 조정에서의 비밀유지는 당사자들과 조정자의 합의를 통하여 보장될 수 있다.[17]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만약 조정절차에서 공개된 비밀자료가 추후 사법절차에 증거로 제출되면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한 당사자는 불리한 입장에 놓여지고, 동 증거의 허용을 반대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일부 회원국들은 명시적인 방지규정을 두고 있다.[18] 예컨대, 벨기에 조정법은, 조정을 위하여 준비된 모든 문서와 조정에서

---

15)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최고법원은 일방 당사자가 조정합의의 이행결과 시간의 장벽을 운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법원은 조정의 이행은 출소기간 규정의 적용을 정지시킨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함으로써 각 당사자는 조정이 실패로 끝난 경우에도 후속적인 법적 소송을 개시할 권리를 보전한다. 따라서 조정절차를 개시함으로써 각 당사자는 조정이 실패로 끝난 경우에도 후속적인 법적 소송을 개시할 권리를 보전한다. **또한 프랑스 민법 2052조에 따르면, 조정을 통해 분쟁을 종결짓는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기결사건(res judicata)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사안은 중복제소금지원칙 따라 법원에 의해 판단될 수 없다.(**법무부, "ADR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016. 1, 125면에서 재인용)

16) EU행위규약 4., EU조정지침 전문., 1(1)조.

17) Newman and Teixeira, supra note 12, 2005, p. 3.(법무부, "ADR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016. 1, 100면에서 재인용)

18) EU조정지침 3(a)조. EU조정지침 전문 (6). 293) EU조정지침 3(b)조. 294) EU조정지침 3(b)조. 295) 조정은 영미법의 'mediation'을 의미한다. 원래 영미법에서 'mediation'과 'conciliation'이 구별되 고 있었으며, 이에 따르면 'mediation'은 '중개', 'conciliation'은 '조정'으로 불려야 할 것이다. 그러 나 국내에서는 mediation과 conciliation에 대하여 조정이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수행된 의사소통은 비밀로 유지되며 이러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동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재판이나 중재에 제출된 정보는 자동적으로 배척된다. 그런데 네덜란드 등은 조정절차에 비밀유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는데 이같이 회원국들 사이의 상이한 규정은 조정을 통한 회원국 간 분쟁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EU조정지침은 조정이 실패한 경우에 조정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제시한 정보는 동 당사자에 대하여 추후 사법절차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19] 즉,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다면, 회원국들은 조정자나 조정과정에 관여한 자들이 재판절차에서 중재와 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에 관한 증거나 진술이 강요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그러나 조정의 비밀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 첫째, 해당 회원국의 공공정책을 고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히 어린이들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사람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일체성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데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둘째, 조정의 결과인 합의의 이행 또는 집행을 위하여 동 합의 내용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된다.[20]

3. 미국 중재협회 조정인의 모범행위준칙[21]

미국 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이하 'AAA'라 한다)는 1926년 창설되어 상사중재를 전문으로 하는 협회로 비영리민간단체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ADR 서비스 기관이다.[22] 근래에 AAA에서는 중재뿐만 아니라 조정의 수요가 높아지자 조정을 행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23] 한편, AAA가 조정인의 행위에 대한 표준모델로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 1994년 제정된 조정인의 모범행위준칙(Model Standards of conduct for Mediators)이다. 동 준칙은 조정을 진행하는 이들에게 윤리적 가이드 라인를 제시하고자

19) Association of Corporate Counsel, european briefings (ACC Docket June 2006), p. 2(법무부, "ADR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016. 1, 107면에서 재인용)

20) EU조정지침 전문, 7(1)조, 7(1)(a)조, 7(1)(b)조.

21) 「조정인의 모범행위준칙」은 1994년에 미국의 AAA, ABA(America Bar Association: 미국변호사 협회) 및 ACR(Association for Conflict Resolution: 분쟁해결협회)의 세 개 단체에 의해 제정되었고, 2005년에 세 개 단체의 대표자들은 개정을 승인하였다.(E. Wendy Trachte-Huber & Stephen K. Huber, Mediation And Negotiation Reaching Agreement in Law and Business, 2nd Edition, LexisNexis, 2007, p.722 -법무부, "ADR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016. 1, 110면에서 재인용)

22) Private Justice, How civil litigation is becoming a private institution : The rise of private dispute centers, Sou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621, 1994, p.626-627.(법무부, "ADR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016. 1, 120면에서 재인용)

23) 함영주, "우리나라 민간분쟁해결기관 구축시의 유의점", 「민사소송 :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제15 권 제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1. 10, 32면.

함에 그 목적이 있고, 세부적으로는 조정인 행위에 대한 안내역할, 조정의 양 당사자에게 정보제공, 그리고 분쟁해결과정에서의 일반 대중의 신뢰를 고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동 준칙은 크게 아홉 개 조항으로 나누어 조정인의 행동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앞서 다른 지침 등과 유사한 조정인의 중립의무, 공평의무, 비밀유지의무 및 신의성실의무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4.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조정은 1995년 2월 8일 민사소송법 Title VI bis (mediation)에 도입되었다. 동 법 131-1조에서 131-15조는 조정제도를 다루고 있는데, 조정절차, 조정인의 자격, 조정인 선임절차, 조정인의 권한 및 의무, 조정절차의 비밀성, 조정결정의 효력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후 프랑스 민법에서도 2002년 3월 4일 법에 의하여 판사가 분쟁당사자들에게 조정인을 만나도록 권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민법 373-2-10조)이 포함되었고, 2004년 5월 26일 이혼개혁이 통과됨에 따라, 민법 255-1조 및 255-2조에서 가사 전문 판사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조정인에게 사건을 회부하거나 또는 당사자에게 조정인을 만나도록 요구할 것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24]

5. 독일

독일의 경우 2000년 발효된 '민사절차법을 도입하는 법'(Act introducing the Code of Civil Procedure: EGZPO) Section 15a에 따라 특정 유형의 분쟁의 경우 공식적인 법원 소송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을 이용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위 EGZPO 제정을 통해 분쟁 해결방법으로서 조정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법원의 사건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 것이다. EGZPO Section 15a에 따라 독일연방 개별 주들은, 주법으로 특정분쟁 유형[25]에 한하여 강제조정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24) Nathalie RIOMET, "The French Approach: legal and practical aspects" in the State of Affairs of mediation in Europe, What can Governments do (more)?, Programme International Expert Meeting (Hague, 29 and 30 June 2006).(법무부, "ADR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016. 1, 185면에서 재인용)

25) **소송가액이 700유로 초과하지 않는 소액 분쟁, 미디어를 통하여 공표되지 않은 특정 명예훼손 분쟁, 이웃 및 인접소유권의 이해관계에 대한 법과 관련된 분쟁이 그것이다.** 한편 강제적 조정절차의 예외가 또한 있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분쟁인 경우가 그것이다. 판결을 변경하기 위한 청원, 담보공탁을 위한 추가 소송, 외국판결의 인정에 대한 소송, 법정 시한 또는 재판 시한내에 제기되어야 하는 교차소송 및 소송, 가사분쟁, 새로

Bavaria, Baden, Hambourg, Hesse, Lower Saxony, North Rhine Westphalia와 Shlewig-Holstein 등 다수 주들은 위 조정전치주의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강제조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조정 시도 없이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은 각하될 수 있다.[26]

한편, 독일의 조정 관련 변호사 등의 권한과 의무 등 역할에 관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인(mediator)으로서의 변호사는 커뮤니케이션 과정, 협상 및 합의를 돕는 역할을 한다. 즉 판사와 다르게 조정인은 어떠한 의사결정 권한을 갖지 않으며, 중재인과 다르게 분쟁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둘째, 독일에서는 ADR을 수행할 사람에 대한 단일한 직업적 배경을 정하고 있지 않다. 컨실리에이터(conciliators)와 조정인 (mediators)은 법조인뿐만 아니라 특히 심리학, 교육, 사업 및 사회과학의 전문적 실무가층으로 다양하게 선정된다. 다만, 독일의 바이에른주는 '민사절차법을도입하는 법'(EGZPO) Section 15a에 따라 바이에른조정법(BaySchlG)을 제정하였는데 위 바이에른조정법의 경우 조정전치주의 사건의 경우 변호사와 전문 공증인만 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27] 셋째, 변호사를 포함하는 모든 조정인은 중립성과 공정성의 임무를 갖는다. 이에 추가하여, 변호사와 공증인 조정인은 그들의 일반적인 직무행위표준(professional standards of conduct)에 구속된다. 특히 조정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인은 동일 사안에 관하여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추후 법원에서 분쟁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을 대리할 수 없다. 넷째, 조정은 공개되지 않으며, 사건 이해관계인들은 조정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원칙적으로 출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변호사를 포함한 조정인은 조정절차 동안 입수된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28] 즉 조정인은 조정절차 동안 입수된

운 재판을 위한 재정신청, 행위 또는 법률시행절차에 따른 분쟁, 소송절차, 부채상환을 위한 약식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집행조치에 관련된 소송이 이에 해당한다.(법무부, "ADR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016. 1, 190면에서 재인용)

26) Katja Funken, supra note 249. 322) Katja Funken, supra note 249. 323) EGZPO Section 15(a)2. (법무부, "ADR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016. 1, 186면에서 재인용)

27) 바이에른 조정법에 따르면 바이에른 법원 주재판사는 강제조정사건 조정인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지명할 수 있다. (1) 조정이 중립적이고 공정할 것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 (2) 제한된 짧은 기간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조정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 (3) 실질적인 특징과 관련하여 바이에른 조정법(BaySchlG)에 부합하는 조정절차를 따라야 할 것. (4) 양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조정은 상공회의소(Chamber of Trade) 또는 기타 산업단체 (industrial groups)의 조정서비스에 수행될 수 있다.(BaySchlG Art.5(3) (Art.22 Executory law of the Constitution of Courts Act and of Federal Procedural Laws). Funken, supra note 249 참조.)

28) 독일은, 조정인과 조정 절차에 참가한 사람에게 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것에 관하여 비밀유지의 무를 부여하고 있고, 조정인에 대해서는 자신의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당사자들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를 배제하고 있다. 이에는 조정 절차에서 성립된 합의 내용의 변경이나 강제집행을 위해 합의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비공개에 우선하는 공공질서를 위한 경우, 특히 자녀의 복리에 대한 위협 또는 누군가에 대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공공연한 사실이거나 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직무적 특권(비밀유지특권)을 갖는다. 다섯째, 변호사 화해제도의 형태로 분쟁당사자 간의 변호사에 의해 합의가 체결된 경우 일차적으로 법원 판결 없이도 직접 집행될 수 있다. 이러한 조정합의가 성립이 된 경우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는 즉시 집행하여야 한다. 참고로 금전 등 구체적인 해결방법이 법원에 미리 공탁된 경우에는 조정합의로 권한을 갖게 된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서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29]

6. 영국

영국 민사절차법(Civil Procedure Rules: CPR)에 의하면, 법원은 당사자들이 조정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재판을 중단할 수 있으며, 만약 분쟁당사자들이 분쟁의 조정을 거절하는 경우 금전적인 패널티까지 부과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이 영국은 판사에게 일정한 경우 ADR 이용을 장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유형의 분쟁에 있어서는 조정전치주의를 거칠 것을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정제도를 폭넓게 이용하고 있다.[30] 참고로 소송전 조정전치주의 절차가 적용되는 분쟁의 유형으로는 개인손해배상(personal injury), 의료과실(clinical negligence), 건설 및 기술(construction and engineering), 명예훼손(defamation), 업무상 손해배상(professional indemnity), 재심(judicial review),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Disease and Illness claims), 주택파손으로 인한 수리와 손해배상(housing disrepair), 임차료 체불에 근거한 건물명도청구(Possession Claims based on rent arrears) 등이 대표적이다.[31]

한편 영국에서의 변호사 의무 및 역할 등에 관련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인으로서 변호사는 당해 조정절차에서 습득한 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정절차의 비밀성은 모든 조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것이 민사조정이든, 상사조정이든 상관없이 조정절차의 비밀성은 엄격하게 요구되어진다. 특히 당해 조정사건에서 법률적 판단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변호사의 경우 각 당사자가 사적으로

유지가 필요하지 않은 사실인 경우 등이 해당한다.(법무부, "ADR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016. 1, 192면에서 재인용)

29) 민사절차법(ZPO) Section 794(1)과 관련하여 Section 796a, 796b 참조.

30) 영국의 경우 법원의 조정회부가 프랑스나 독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판사와 변호사에 대하여 조정 장려의무를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법무부, "ADR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016. 1, 95면.)

31) European Commission, supra note 6, p.15.(법무부, "ADR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016. 1, 96면.)

제공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기밀로 유지할 것을 서약해야 하는바,[32] 통상적으로 조정 당일 조정절차를 규율하기 위하여 서명되는 조정합의(mediation agreement)에 비밀유지조항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변호사를 포함하는 조정인은 분쟁당사자와의 면담 등에서 숙지한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해야 하며, 각 분쟁 당사자 간에 갖는 개별 면담에서 숙지된 사실도 일방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이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허가하지 않는 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조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분쟁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어느 일방당사자도 조정과정에서 제공된 관련서류 또는 공식적인 조정절차에서 숙지한 사실을 가지고 조정실패 이후 재판절차 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둘째, 분쟁 당사자가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조정인(mediator) 선정과정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호사와 같은 조정인을 선임할 수 있고, 조정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해 조정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한편, 조정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역할과 의무를 강조한 판결이 있는데, Burchell 사건[33]에서 법원은 변호사는 그 고객에게 조정의 활용을 권유하여야 하며, 조정을 언제, 어떻게 이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자문해 주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모든 사건의 대리인은 그들의 고객과 다른 관련 당사자와 함께 분쟁 또는 분쟁의 특정 쟁점을 ADR을 통하여 해결할 가능성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고, 그들의 고객이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에 대하여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Cowl사건[34]에서도 ADR 이용의 장려와 관련하여 법원과 변호사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동 사건은, 피고가 소유하던 주택을 폐쇄하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이었는데 위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비공식적인 민원처리절차의 이용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동 제안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소송을 피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함을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주지하여야 함에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즉, 당사자 간 분쟁의 상당 부분이 소송절차 밖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법절차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 일종의 소 각하 판결의 취지로 원고 패소판결을 한 것이다. 다만 후속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 법률상 쟁점인 것이 명백하면, 해당 사건은 그 이후 법원에 의해 검토될 수는 있다고 보았다. 결국 영국법

32) Kallipetis and Ruttle, supra note 187, pp .221-222. 3(법무부, "ADR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016. 1, 97면.)
33) Burchell v. Bullard [2005] EWCA Civ.358 (Court of Appeal)
34) Cowl v. Plymouth City Council [2001]EWCA Civ.1935 (Court of Appeal)

원의 이러한 판결은, 변호사로 하여금 그들의 고객에게 ADR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의뢰인이 그것을 채택하지 않았을 경우의 결과에 대하여까지 설명(경고)하여야 하는 것이 변호사의 새로운 직업적 의무가 된 것을 의미한다.[35]

7.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시사점

외국의 입법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변호사를 포함한 조정인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전문적 지식과 함께 조정절차에서 습득한 사실에 대한 비밀 유지의무라고 볼 수 있다. 조정 절차의 비밀 보호는 당사자들이 조정 절차에서 재판을 의식하지 않은 가운데 부담 없이 솔직하고 자유롭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 분쟁 해결이 본질적 핵심이다. 그러므로,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이 강조되는 가사조정과는 달리 최소한 민사조정 절차에서는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는 조정과 소송의 준별,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그리고 조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만 비밀 보호의 범위나 대상, 그리고 그 예외와 위반시 효과는 복잡하고 난해하여 뚜렷한 원칙을 세우거나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한계도 있다. 상세한 원칙과 예외를 정하기도 어렵지만 원칙과 예외를 정하더라도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과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의 처리가 곤란해질 수 있고 결국은 개별 사건에서의 적용과 해석의 문제로 귀착할 수밖에 없다.[36] 오히려 비밀 보호와 관련된 우리나라 민사조정법의 규정[37]은 간명하면서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조정위원에게 형사제재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조정절차의 비밀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5) Kallipetis and Ruttle, supra note 187, p. 216.(법무부, "ADR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016. 1, 193면.)

36) 이런 이유 등으로 조정절차에서 비밀 유지를 강조하는 미국에서도 비밀 유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주로 비밀 유지의 남용이나 당사자의 전략적 행위의 가능성을 방지할 필요성과 관련하여 주장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정 절차에서 조정인이 당사자가 제출한 어떤 자료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한 경우 당사자는 변론 절차에서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고, 증재 절차에서 피고 측 핵심 증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 탄로된 경우 그 증인은 변론 절차에서 직접적인 질문에 우회적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 대비해 ADR절차에서 일어난 일은 반드시 기록되어 향후의 변론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정 절차에서 비밀 유지가 엄격하게 보장되면, 사기·협박이나 부당한 영향 등과 같은 전통적인 계약법상의 항변에 따라 조정 조항의 효력을 부정하려는 당사자는 사실상 그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37) 제41조(벌칙) ①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의 과정이나 조정장 또는 조정위원의 의견 및 그 의견별 조정위원의 수(數)를 누설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Ⅳ. 조정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 제고 방안

1. 수소 법원 중심 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첫째, 조정을 요청하지 않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 재판실무에선 조정사건으로 회부된 사건 당사자에게는 무조건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운영이 되고 있다. 애초에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나, 조정절차 회부에 동의한 당사자라면 그 절차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당사자에게 그 절차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반론제기가 실무변호사를 중심으로 많이 있다. 소송당사자로서는 조정절차를 거부할 권리도 있는 것이므로 판사나 조정인은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하면 왜 필요한 것인지 설득하고, 그 설득이 효과가 없다면 당사자 없이 절차를 진행하거나 결렬되는 것으로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38] 둘째, 조정절차 주재자들의 자세다. 조정 본령 외 이야기는 원활한 진행을 위한 양념조로 어느 정도만 첨가돼야 하며, 아무리 중재자가 선의에 기초하여 말을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듣는 상대방 쪽에서 과하다고 느껴지면 조정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송당사자들은, 극심한 다툼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는 성인들이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법적 결론을 원하는 것이지 인생 상담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조정인은 이해해야 한다. 또한 당해 사건의 재판권이 있는 법관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수소법원 조정은 증거관계에 기초한 평가적 조정 내지 비구속적 중재의 성격을 띠고 있어 높은 조정 성립률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조정절차에서는 당사자들이 그 주재자의 태도가 강압적이라고 느끼는 순간, 실패한 조정이 되고 만다. 그 결과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조정이 성립되어 성공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이후 그 당사자는 법원과 현재의 재판시스템에 대해 불신을 갖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

38) **법원 조정이 시작단계부터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수소법원 법관은, 소송 당사자의 면면과 소장과 답변서를 통해 나타나는 내용을 잘 검토하여 조정이 어려운 경우와 비교적 용이한 경우를 잘 구분하여야 한다. 즉, 일정 규모의 사건의 경우 무조건 조정위원회에 보내는 경향을 지양하고, 사건의 성격에 따른 조정회부원칙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수소법원 법관이 조정안 또는 화해안을 도출한 근거와 조정 또는 화해를 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를 정확하게 제시한다면 조정·화해 성공률이 더욱 높아질 것인바, 의뢰인이 조정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조정에 회부하는 재판부가 더러 있는데 이러한 관행도 시정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 또한 조정 회부 여부를 사안에 따라 잘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바, 조정 회부 전 당사자의 조정의사를 필요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상대방에게 조정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조정에 회부돼 상당 시간을 허비한 경우도 있었던 만큼 반드시 재판기일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 등의 수단을 적극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다.[39]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은 법원 판사가 조정절차를 진행한 경우 선입견이 없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소송의 재판에서 조정을 담당한 판사를 배제하도록 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도 80~90% 가까이 수소법원에서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수소법원의 조정에 의존하는 분쟁해결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독일의 경우처럼 비법관 중심으로 판단자와 조정자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조정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40]

2. 교육을 통한 조정인으로서 전문성 확보

변호사는 조정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분쟁당사자들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조정 대리인으로서의 변호사의 역할은 첫째,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 전략수립, 둘째, 조정제도 및 절차 전반에 관한 상세한 설명, 셋째,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의뢰인에 대한 정보제공, 넷째, 조정과정에서의 법적 주장에 대한 사전조사 및 관련 조언 제공, 다섯째, 의뢰인의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한 최선의 조정 합의서 작성 등이다. 위와 같이 최선의 조정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조정 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조정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변호사에게 소송뿐만 아니라 협상, 조정기법 등 다양한 분쟁해결기법에 대한 전문적 분쟁해결 역량을 배양할 기회를 제공하며, 의뢰인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분쟁해결을 추구하게 할 수 있게 해 준다.[41]

위와 같이 조정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참여 및 역할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정인으로서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 법관의 경우처럼 높은 수준의 법률 전문성과 법조윤리가 담보되어야만 당사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로스쿨 교육과정[42]에서 ADR 관련 교과 프로그램을 적극 개설하여 이수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도 모의재판이나 법정방청 등에 더하여 조정과 화해제도 등에

39) 이로리, "우리나라 조정제도의 현황과 과제", 중재 337호, 대한상사중재원, 2012. 6, 45면 이하; 임채웅, 2020. 5. 18.자. 대한변협신문 칼럼기사(http://m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496)

40) 김용섭, 전게논문, 10면.

41) 법무부, "ADR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016. 1, 205면.

42) 미국의 경우 하버드로스쿨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미국의 로스쿨도 커리큘럼에 ADR을 포함시키고 있고, 그 교육과정의 이수자에게는 자격증을 부여하기도 한다. 그리고 뉴욕대학, 워싱턴대학, 컬럼비아 대학 로스쿨 등에서는 조정클리닉을 개설하여, 일반시민들로부터 실제 사건을 의뢰받아 학생들과 교수들이 참여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습교육을 수행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로스쿨실무교육에서도 도입이 시급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성중탁, "로스쿨 실무교육 강화방안으로서 리걸클리닉 강화 및 부설로펌 설립문제",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015. 8, 45면.)

대한 기본교육을 통하여 ADR 제도의 중요성을 어릴 때부터 주지하고 상식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조정에 대한 기본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자라도 조정 등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혀 없을 수 있고, 조정에 대한 기본교육이야말로 조정 절차에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제요소이기 때문이다.[43]

이와 관련하여, 독일은 「조정인의 교육 및 재교육(연수)에 관한 시행령」에서 조정인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조정인 자격을 받으려면 조정 제도의 개관과 조정의 기초, 조정 절차의 과정과 구조, 협상 기법과 능력, 면담·커뮤니케이션 기법, 갈등(해소) 능력, 조정 관련 법률, 조정절차와 법, 개인적 능력·책임과 역할의 이해 등 조정 관련 교과목에 관해 총 120시간의 기본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처럼 조정인의 질적 담보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정인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강도 높은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역시 조정인의 선발에 있어 교육과 이수를 요구하도록 하여야만 변호사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조정관련 교육을 받고 인증을 받을 것이므로 조정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조정인 인증제도'와 같은 교육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도 조정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정 비용을 지급하게 될 것이며, 이로써 조정인에 대한 인증의 권위도 올라가게 되어 조정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선순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44]

미국의 경우에도 주법원에서 법원 규칙(rule)등을 통해 조정인의 등록이나 승인에 필요한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인디애나(Indiana) 주법원에서는 조정인 등록 요건으로, 변호사로서 최소 40시간 민사조정에 관한 기본 교육을 받아야 하며, 3년마다 최소 6시간의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본 교육과 재교육은 로스쿨에서의 교육을 포함한다. 교육 내용은 ① ADR 과정, ② ADR 실무와 직접 관련되는 문제와 절차 진행자의 전문적인 책임, ③ ADR 실무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 ④ ADR과 관련된 전문적 문제와 ADR의 원칙, ⑤ 소송과는 다른 환경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쟁점에 대한 ADR 기법의 적용 등이다.

한편, 노스다코타(North Dakota) 주법원은, 조정인의 자격으로, 최소 15시간의 역할극을 포함하여 최소 30시간의 조정교육 이수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3년마다 9시간의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재교육에는 주 또는 전국 단위 ADR 콘퍼런스 참가가 포함된다. 교

43) 이로리, "우리나라 조정제도의 현황과 과제", 중재 337호, 대한상사중재원, 2012. 6, 48면.
44) 김용섭, 전게 논문, 12면.

육 내용은 ① 갈등 해결 및 조정 이론(갈등의 원인, 이익 기반 거래와 입장 기반 거래, 갈등 해결 모델 등), ② 조정 기법[정보취합 기법, 의사소통 기법, 문제해결 기법, 상호작용 기법, 갈등관리 기법, 협상기법, 분리조정 방식(caucusing), 문화적 및 성적(性的) 쟁점, 힘의 균형 등], ③ 조정과정의 구성요소(조정의 시작, 자료 수집, 이익의 분별, 선택항의 개발, 문제의 해결, 합의안의 개발, 의사 결정, 조정의 종결, 합의안 작성, 조정 과정의 평가 등), ④ 조정인의 행동(conduct)(이익의 충돌, 비밀의 유지, 중립성, 윤리, 실무의 기준, 조정인 소개 등), ⑤ 조정에 관한 법령과 실무 등이다.

한편, 캔자스(Kansas) 주법원도 조정인의 요건으로서, 16시간의 기본 교육과 사건 유형별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 교육 내용에는 ① 갈등 해결 기법, ② 중립성, ③ 조정 합의서 작성 방법, ④ 조정인의 윤리, ⑤ 조정 역할극, ⑥ 의사소통 기법, ⑦ 사건의 평가, ⑧ 조정에 관련된 법규 등이 포함된다. 사건 유형별 추가 교육은 예컨대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 14시간의 조정기법 교육과 10시간의 민사사건 또는 민사재판 관련 교육이며, 교육 후에도 1년간 승인된 조정인과 함께 또는 그의 감독 하에 3건의 민사조정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켄터키(Kentucky) 주법원에서는 법원 부속형 조정을 진행하는 조정인의 자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 민사조정을 진행하려면 최소 40시간의 조정교육을 받아야 하고 15시간의 조정실습(실제 조정인의 지도하에 최소한 3건의 조정사건에 참여)을 해야 한다. 조정교육에는 ① 의사소통 기법, ② 분쟁 해결 이론 및 실무, ③ 조정 이론, ④ 실무와 기술 등이 포함된다. 서양의 조정인은 법원 부속형 조정일지라도 조정절차 전반을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하며, 일종의 자격 취득의 요건으로 조정에 관한 교육이 실시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정 관련 교육 시간과 내용을 사정이 다른 우리나라에 직접 대입하기는 곤란하지만 어떤 경우이든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각급 법원과 조정학회 및 각종 조정 유관 기관에서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조정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조정에 관한 기본적인 교육부터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물론 변호사가 아닌 생업에 종사하는 조정위원의 경우에는 장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조정 제도의 개관, 조정과 소송과의 관계, 조정의 진행 방법, 조정 기법, 합의서 작성 방법, 비밀 유지 등 조정에서 유의할 사항, 조정 관련 법령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변호사의 경우에는 주로 조정기법과 조정사례 등을 중심으로 시간 배분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하루 등 짧은 교육을 자체

적으로 실시하기보다는 사법연수원과 대한변협,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서 기본적으로 40시간 이상 집체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교육을 모두 이수한 변호사에게는 '조정전문 변호사 인증'을 해주는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변호사회 등에서 행하는 조정전문가 양성교육은 사적 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가 되며, 변호사들에게는 분쟁해결 시장의 파이(PIE)를 키움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이다.

3. 조정전치주의 도입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독일처럼 일정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해 당사자와 변호사가 조정단계와 재판단계를 구분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부감도 줄이고 조정성공률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유력하다.[45] 또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할 경우, 변호사단체와 같은 외부 분쟁 해결기관에서 사전 분쟁 해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조정전치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법원 외부 기관에 의한 조정 활성화를 더욱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46] 이렇게 되면 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생겨나 변호사업계에 새로운 일감도 제공할 수 있고 변호사의 역할도 공격·방어에서 분쟁 해결 쪽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법원은 조정 회부 여부를 사안에 따라 잘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위해 조정 회부 전 당사자의 조정의사를 필요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에게 조정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조정에 회부돼 상당 시간을 허비한 경우도 있는 만큼 반드시 기일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 등의 수단을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면면, 소장과 답변서를 통해 나타나는 내용만 봐도 초기 단계에서 조정이 어려운 경우를 구분할 수 있는데, 소액 사건 등 일정 규모의 사건의 경우 무조건 조정위원회에 보내는 경향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사건의 성격에 따른 조정회부가 필요하다. 또한, 조정안 또는 화해안을 도출한 근거와 조정 또는 화해를 하

4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2018년) 민사본안 접수 건수는 연평균 100만여 건이 넘으며 이중 소액사건은 약 70만여 건에 달한다. 그리고 상당수의 민사사건은 비용이나 갈등 해결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당사자 간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 그러나 법원 민사 조정에 회부되는 사건은 5년간 연평균 4만 3천여 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대표발의, 2023540호)에서는, '제2조(조정사건 및 조정전치) ②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먼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46)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법 등은 외부 관련 기관과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사법조정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대한상사중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대한법무사회, 로스쿨(고려대, 중앙대, 성균관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비자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공정거래조정원, 한국거래소, 기독교화해중재원 등과 업무협정으로 민사조정의 분쟁해결을 하고 있다.

는 것이 유리한 이유를 정확하게 제시한다면 조정·화해 성공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47]

또한,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거나 또는 재판부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조정기관(조정전담부, 담당재판부, 조정위 원회)의 선택과 조정절차(강제조정, 임의조정, 조정권유 등)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48]

또한, 변호사에 의한 조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판사의 관여를 배제하고 변호사를 포함한 조정위원들이 조정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조정사건에 관한 최종적인 조정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49]

4. 조정 관련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한 조정제도의 통합적, 체계적인 운영

우리나라 ADR 기관은 개별법에 근거하여 각 행정기관 산하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그 수가 60여 개 기관이나 된다. **지난해 사법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 행정형 ADR 기관·기구 숫자는 60여 개로 대부분 소속 기관 내에서 분쟁조정팀이나 위원회 등의 명칭으로 운영되며, 최근 활성화가 되는 추세여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다만, 아직 행정형 ADR은 구체적인 분쟁에 관하여 어떤 기관의 어떤 ADR에 분쟁해결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변호사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다 조직적인 홍보나 안내가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시효중단효, 조정위원회와 조정부의 관계, 조정의 성립요건, 성립된 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규정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기본적인 절차규정이 관계 법률마다 다르고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받고 있다. 민간형 ADR의 경우, 시민단체에서 사회적인 분쟁해결과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는 하나, 분쟁해결을 주목적으로 하는 민간형 ADR 기구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상설적인 민간 ADR기구로서 대한상사중재원이 있을 뿐이다. 즉 우리나라는 민간형 ADR이 대단히 빈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바, 향후 민간차원의 ADR 기구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조정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DR기본법'의 제정이다. ADR 제도의 이용을 촉진하고 재판절차와 연계하기 위

47) 서정일, "ADR제도의 통합적 운영방안", 중재 331호, 대한상사중재원, 2010. 3, 55면 이하.
48) 황승태, 「한국형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6, 425-427면.
49) 정영화, "한국의 법문화 변화에서 법원과 법률가의 역할: 법원연계 민사조정의 활성화 방안", 강원법학,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5, 77면 이하.

한 ADR법의 제정·운영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 즉, 우리나라도 ADR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ADR, 특히 민간형 ADR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50] 위 법률에는 ADR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ADR의 시효중단 등의 법적 효과가 부여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51]

둘째, 'ADR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및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ADR 현황을 보면, 민사조정, 가사조정 등 사법형 ADR이 우리나라 ADR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민간형 ADR기관은 대한상사중재원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 ADR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형 ADR의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법무부나, 대법원 또는 대한변협 및 각 지방변호사회 산하에 민간형 'ADR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ADR을 체계적, 통합적으로 관리,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2] 즉, ADR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ADR 기본법과 같은 근거법령을 마련하여 동 법률에 지원센터 및 관련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위원의 위촉, 분쟁해결의 구체적인 절차, 분쟁해결의 법적 효력 인정범위, 제3자 보호문제, 시효중단효 등에 대하여 통일적인 법적 규율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각 ADR 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ADR기관 간의 제휴, ADR에 관한 정보의 대국민 홍보 등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53]

---

50) 김광수, "우리나라 ADR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 「계간중재」 가을호, 대한상사중재원, 2009. 10, 77면 이하.

51) 서정일, 전게 논문, 55면.

52) 참고로, **미국의 경우 ADR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무료 또는 소액의 수수료만 부과하는 지역분쟁해결센터뿐만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ADR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ADR서비스 기관이 많이 있다. 1970년대부터 미국변호사협회(ABA) 등 여러 민간단체의 자생적 ADR프로그램이 등장한 것이다. 민간형 ADR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기관으로 ①지역조정센터(Community Mediation Center), ②분쟁해결협회, 사법중재서비스(JAMS), ③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④로스쿨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영국의 경우 대표적인 민간형 ADR 기구로 CMC(Civil Mediation Center)가 있는데, CMC는 민사 및 상사분쟁의 조정을 촉진할 목적으로 2003년에 설립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자율기구로서 정관과 400개 이상의 단체 기관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회원은 조정서비스 제공기관, 조정인, 변호사회(law society, bar council), 학술단체, 법무부,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등이다.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조정 제공자에게는 인증을 부여한다. 개별 조정인의 선정과 그에 대한 자격 인증은 CMC가 아닌, 인증을 받은 조정서비스 제공기관이 한다. 조정서비스 제공기관은 런던과 각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으로는 분쟁해결촉진센터(Center for Effective Mediation: CEDR), ADR Group, Association of Cambridge Mediators, Association of Midlands Mediators 등이 있다. 이들 조정서비스제공기관은 조정인 명부를 비치하고 각 사건에 적합한 조정인을 지정한다. 조정 수수료는, 청구금액의 규모, 조정 소요시간에 따라 표준화되어 있다. 청구금액이 5,000 파운드 이하 사건의 경우 1시간 기본단위의 수수료는 당사자 1인당 50파운드이며, 1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50파운드가 추가된다. 15,000 파운드 초과 50,000 파운드 이하 사건의 경우 4시간 기본단위에 425파운드이며, 초과 시간당 95파운드가 추가된다.(유병현, "미국의 소송대체분쟁해결제도(ADR)의 현황과 그 도입방안", 민사소송 제13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9. 5, 99면 이하.)

53) 참고로, 미국중재협회(AAA)의경우 중재인과 조정인의 훈련 및 직원에 대한 재교육을 위하여 매년 엄청난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며, 각종 매스미디어·행사·출판물·회의등을 통하여 중재를 비롯한 ADR 이용의 중요성을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

한편, 센터가 앞장서서 잠재적인 ADR 고객들에게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선택에 대한 안목을 제공하고,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이외의 민간전문가의 활용 및 민간 ADR 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 집단에 대한 'ADR 인증제도' 도입도 요망된다.[54]

마지막으로, 조정 등 ADR 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일반 국민들의 경우 ADR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소송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고, 변호사도 ADR 절차보다는 소송에 의한 해결을 권장할 가능성이 크다.[55] ADR 제도에 대한 부지(不知)는 국민들의 ADR 제도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조정과 화해는 판결이유를 쓰지 않아 법원의 편의상 활용되는 제도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분쟁당사자들이 ADR 제도를 제대로 공감하고 이를 잘 활용하며, 그 결과에도 신뢰하는 문화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ADR 종합지원센터가 법제화되기 이전이라도 대한변협과 각 지방변호사 등이 주도하여, 각 지방변호사회 사무실, 로펌, 개인변호사 사무소 등 분쟁당사자의 제1차적 접근장소는 물론 언론과 방송 등에서 ADR에 대하여 신속한 안내가 되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읽기 쉬운 분쟁 관련 용어집이나 ADR을 통한 분쟁해결사례집 등을 편찬하여 일선 변호사와 국민들이 보다 쉽게 ADR 제도를 활용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5. 조정 등의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와 변호사단체의 역할 방향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ADR제도의 활성화 방향을 바탕으로, 변호사나 변호사단체의 역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호사는 법원 조정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은 물론이지만, 법원조정센터의 상임조정위원 내지 각급 법원에 설치되어 있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으로도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법원조정은 촉매 효과를 가지고 있어 법원에서 세련된 조정절차를 제공함으로써 조정이 분쟁 해결의 한 방법으로 확고하게 정착되면, 행정형 내지 민간형 ADR의 활성화에**

54) 민간형 ADR 기관의 중립성, 공평성, 전문성, 신뢰성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본과 같이 설립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55) 일반 국민들의 경우 ADR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소송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고, 변호사도 ADR절차 보다는 소송에 의한 해결을 권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ADR에 대한 사회적 확산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일반 국민에 대하여도 변호사회가 주도적으로 홍보하여 ADR에 대하여 변호사회, 로펌, 개인변호사 사무소 등 분쟁당사자의 제1차적 접근장소에서 항상 ADR에 대하여 안내해야 할 것이고, 분쟁 관련용어집이나 ADR을 통한 분쟁해결사례집 등을 편찬하여 국민들이 정확하게 ADR에 대한 제도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에 더하여 법원 조정은 법원 이외의 ADR에 대한 기본적인 모델을 제공할 것이며, 더 나아가 법원 외부 ADR을 진행할 풍부한 인력도 배출하게 된다. 조정위원으로서 법원조정의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는 법원 이외의 ADR 절차에서 신뢰도가 높은 조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56]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법원조정센터의 경우 가급적 법관, 특히 수소법원 판사가 관여하지 않는 형태로 조정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즉, 법원조정이 활성화되는 경우 모든 조정사건을 판사가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며, 조정위원이 주도하는 조정은 장차 민간형 ADR이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인적 자원을 배출하는 면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조정에 있어서도 법관을 대신하여 변호사가 조정자 역할을 담당함이 상당한 것이다.

둘째, ADR기본법의 제정에 관한 역할이다. 일본의 경우, 일본변호사회는 ADR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ADR법 제정 후 인증 ADR 기관 설립에도 적극 참여하여 각 지방변호사회가 인증 ADR 기관을 설립하여 지역별 ADR 절차를 실시하고 있으며, ADR중재법학회를 설립하는 데에도 법학 교수들과 더불어 참여하여 인증제도 시행 이후 5년마다 ADR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ADR법을 제정함에 있어 변호사회가 앞장서서 법 제정에 일정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 향후 ADR기본법 등이 제정되고 위 법률에 따라 인증받은 민간 ADR기관이 설립될 근거가 마련되면 각 지방변호사회가 민간형 ADR기관을 주도적으로 설립하여 지역별 ADR절차의 실제 구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관한 특별한 ADR절차에서 일본 변호사회의 역할은 지대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변호사나 변호사회가 민간 ADR 절차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때,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57]

---

56) 법무부, "ADR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016. 1, 205면.

57) **대규모 재해에 기인한 분쟁해결의 경우에는 ADR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바, 동일본 대지진사건에서 보여준 일본 변호사단체의 역할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일본의 센다이(仙台)변호사회의 '지진재해(震災) ADR'와 같이 조정신청 수수료 및 상대방 수수료를 무료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 간에 절반씩 부담하는 감액 방식, 그리고 신청인이 자신의 신분상황, 전화번호, 분쟁내용 등을 간략하게 기재하여 팩스 등으로 분쟁해결센터에 송부하면, 그 후 신청서를 조력해 주는 변호사가 전화 등으로 분쟁의 요점 등을 묻고, 논점을 정리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은 참고할 점이 많다. 둘째, **개인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단체와 같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조직력과 전문성 등에 있어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재해사건에 있어서는 분쟁해결자로서 적합하다. 변호사단체가 ADR절차에서 그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이 일정하게 담보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형 인명사고와 같은 대규모 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들이 공익의 담당자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ADR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의 조성도 변호사회를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변호사는 행정형 ADR기관의 조정위원으로도 적극 참여하고 활동할 필요가 있다. 행정형 ADR기관의 경우 조정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대부분 전, 현직 고위공무원이나 대학교수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변호사 참여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행정형 ADR 절차의 전문성이나 중립성이 저하되는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하므로 각 행정형 ADR 기관에서는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58]

넷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변호사회에서 법원이나 조정학회 등 유관단체와 손을 잡고 조정이나 중재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개설하여 조정과 중재 등 ADR분야의 전문가 양성교육을 체계화, 확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조정인 또는 중재인을 양성하는 전문기관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나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법원 및 학회와 연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조정인이나 중재인을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교재를 개발하여 ADR전문가 양성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전문 집체교육 이외에도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ADR클리닉, ADR 심포지엄과 세미나, ADR워크숍 등의 다양한 과정을 연중 상설 프로그램으로 실시하여 변호사가 ADR 전문가로 거듭나고 ADR이 변호사 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도록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59]

V. 결론

조정 등 ADR 제도가 크게 활성화되면 국민은 분쟁 해결을 매우 효율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고 변호사업계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변호사의 역할도 종래 공격·방어에서 분쟁해결을 주도하는 쪽으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앞으로 변호사들도 의뢰인들에게 재판 외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방안의 이용을 적극 설명하고 권유하여 국민들이 ADR을 제도적으로 활용하도록 앞장서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법조인은 이제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쟁의 유발자나 그 해결사보다는 '분쟁의 치유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의무가 있다. "**변호사들이여 화해를 권장하고, 소송을 조장하지 말라. 이웃에게 소송을 조장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은 없**

58) 황해봉, "행정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쟁해결 창간호, 한국조정학회, 2011. 6, 34면 이하.
59) 황승태, "한국형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6. 6, 123면 이하.

다"라고 한 변호사 출신의 미국 링컨 대통령의 말을 다시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단순히 법률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나 법 해석자이거나 단지 의뢰인의 욕구를 잘 따르는 소송대리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풍부한 법률지식과 인격적 소양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분쟁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조정자이자 주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광수, “우리나라 ADR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 계간중재 가을호, 대한상사중재원, 2009. 10.

김용섭, “행정법상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조정”, 저스티스 제81호, 한국법학원, 2004. 8.

김용섭, “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조정인의 교육과 역량”, 조정마당 열린대화 9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면.

박노형, “조정의 선진화 및 활성화 소고”, 분쟁해결 창간호, 한국조정학회, 2011. 6.

법무부, “ADR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016. 1,

사법연수원, “ADR”, 2015.

서정일, “ADR제도의 통합적 운영방안”, 중재 331호, 대한상사중재원, 2011. 3.

성중탁, “로스쿨 실무교육 강화방안으로서 리걸클리닉 강화 및 부설 로펌 설립 문제”,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015. 8.

유병현, “미국의 소송대체분쟁해결제도(ADR)의 현황과 그 도입방안”, 민사소송 제13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9. 5.

이로리, “조정교육과 법조인 조정전문가 양성의 필요성”, 법률신문, 2018. 1. 9.자 연구논단

임채웅, 2020. 5. 18.자. 대한변협신문 칼럼기사.

정영화, “한국의 법문화 변화에서 법원과 법률가의 역할: 법원연계 민사조정의 활성화 방안”, 강원법학,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5.

함영주, “우리나라 민간분쟁해결기관 구축시의 유의점”, 민사소송 제15 권 제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1. 10.

황승태, “한국형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6. 10.

황해봉, “행정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쟁해결 창간호, 한국조정학회, 2011.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1

최계영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